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 _Vol.196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7.24.~7.30.) -

August 1, 2023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③ 법률 발의안
   ④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2023. 7. 26)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5. 지난 주(7/24～7/30)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 재정부	• **2023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함 (아래 입법(행정) 예고 법안 중 기획재정부 소관 참조) 2023년 세법개정 기본방향으로는 **①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고용 지원** **②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③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한 출산·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④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정책 목표: 경제 활력 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 **추진 전략** **경제활력 제고** — **수출·투자·내수 진작** →투자·고용 촉진 →기업경쟁력 제고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 **세부담 완화**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미래 대비** —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 극복** →결혼·출산·양육지원 →청년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지역균형 발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납세자 친화적 환경·세입기반 확대**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회피 관리 강화 →과세형평 제고	2023-07-27

부처	내용	일시
	2023년 세법개정 상세 내용으로는	

1. 경제활력 제고

투자고용 촉진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업경쟁력 제고	•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조정
창업벤처 활성화	• 직무발명금 비과세 한도 상향 •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법인 세액공제 등 신설 • 기술 혁신형 M&A 요건 완화

2. 민생경제 회복

서민·중산층 부담경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전통시장 · 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신설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 특례 연장

3. 미래 대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 근로자 출산 · 양육 지원금의 손금 · 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청년자산형성 노후대비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등 비과세 적용 연장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지역균형 발전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자 권익보호	•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 •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조세회피 관리강화	•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부여 • 국외주식 기준보상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여
과세형평 제고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산업 인공지능 연합(얼라이언스)」 출범** **- 연말까지 수요-공급기업 협업 기반의 산업 인공지능 해법(솔루션) 상용화 사업 40개 발굴** 자동차·조선·철강·기계·전자·에너지 등 10대 주요 업종별 가치사슬(밸류체인)을 대표하는 대기업 20개사 등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인공지능(AI) 연합(얼라이언스)」이 출범한 바, 개별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가치사슬(밸류체인) 전체가 연계·협력하여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상용화 사업들을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임 자동차·조선·철강·기계·전자·에너지 등 주요 업종별 가치사슬(밸류체인)을 대표하는 대기업 20개사 등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기로 함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차, LG전자, 현대제철, LG에너지솔루션 등 주력산업 대표기업과 삼성SDS, SK C&C 등 디지털 전환(DX) 공급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 인공지능(AI) 연합(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함 이번 연합(얼라이언스)은 '20년 결성되어 현재까지 4백여 개 기업·기관들이 활동해 온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업종을 가로질러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이동성(Mobility), 기계장치(Machinery), 최적화(Optimization) 등 3개 기술분과와 산업데이터, 법·규제 등 2개 정책분과로 나눠 운영됨 연말까지 기술분과에서는 수요-공급기업 협업 기반 산업 인공지능 해법(솔루션) 상용화 사업 40개, 정책분과에서는 산업데이터 활용촉진 과제 15개와 법·규제 개선사항 10개 이상을 발굴할 계획임 이미 ▲자동차 전주기(설계~중고 판매) 데이터 연계관리, ▲지능형 선박(스마트쉽)-기자재-해운-항만 간 연계, ▲전력제품 대기업 디지털 전환(DX) 해법(솔루션)과 경험을 협력사에 이전, ▲시멘트 공정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공정제어 등 10여 개 과제의 협의가 시작되었음 「산업 AI 얼라이언스」 분과별 주요 과제 협의 현황 내용으로는 **① (자동차) 자동차 라이프사이클 데이터 통합·연계 플랫폼** – A사는 설계·생산·판매·운행·중고거래 등 자동차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데이터를 결합·가공하여 혁신 新서비스 창출 희망 ⇒ 차량 라이프사이클 데이터 플랫폼 구축 협의 예정 **② (조선) 스마트십 데이터 생태계(선박–기자재·해운·항만 등)** ※ 선박-육상 데이터를 연계하는 산업부 선도 밸류체인 육성사업('21~'23)의 후속사업 – 조선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관련 산업(기자재, 해운, 항만 등) 간 데이터 상호운용이 가능한 스마트쉽 서비스 플랫폼 구축	2023- 07-25

부처	내용	일시
	③ (전력) DX선도 대기업 혁신 솔루션을 협력사에 이전 구축 – A사는 자체 DX역량은 우수하나, 협력사의 납품불량 문제는 해결 불가능 ⇒ 차량 라이 ⇒ A사의 DX 솔루션을 협력사에 이전하고 데이터 공유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VC 전반의 역량강화 도모 **④ (화학) AI 최적화 통해 시멘트 소성공정에 폐기물 완전 연소** – 시멘트 연속 소성공정에 AI 기반 최적화 기술을 적용하여 석유화학 폐기물 완전연소 추진 **⑤ (이차전지) 배터리 양극재 생산공정 설비의 AI 제어** – 배터리 양극재 생산공정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XAI* 기반 최적 공정조건 도출 및 품질예측 분석 기술 개발 * eXplainable AI :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 **에너지 新산업 수출 '30년 2배 확대 추진** **- '35년 소형모듈원전(SMR), 초고압 직류송전(HVDC) 케이블, 수소 터빈 등 10개 이상 품목 세계(글로벌) Top 3 목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新산업 수출 동력화 원탁회의」 (제10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업계 대표, 금융계, 학계, 관계기관들과 함께 「에너지 新산업 수출 동력화 전략」을 논의함 이번 회의는 최근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출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됨 먼저, 수출 유망품목을 시장 성장성, 기업역량 등에 따라 3개 그룹을 나누고 차세대기술 선점을 통한 초격차 유지, 대규모 실증 사업(프로젝트) 추진, 해외 최정상급 석학과의 협업 촉진 등 맞춤형으로 기술개발·사업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임 다음으로 유망진출국과의 정부 간(G2G) 협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친환경(그린) 공적 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활성화함 마지막으로 약 5천억 원 규모의 정책기금(펀드) 조성과 약 100조 원 이상의 민관 금융투자 확대, 해외 진출 전문인력 양성,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지원 강화 등 혁신기반도 조성할 계획임 산업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新산업 수출을 2030년 2배, 2035년 3배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이와 함께 우리나라 에너지 新산업 유망품목의 세계(글로벌) Top 3 진입도 10개 이상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023-07-27

부처	내용	일시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술] 수출 유망품목 기술혁신·사업화** – 유망품목을 시장성장성, 기업역량에 따라 그룹별* 기술개발·사업화 전략성 강화, 기술·시장 전략그룹 신설 등 에너지 R&D 혁신 * (그룹 Ⅰ) 핵심전략 품목 : 초격차 유지, 차세대 기술선점, (그룹 Ⅱ) 유망시장 품목 : 시장지향형 대규모 실증 추진 (그룹 Ⅲ) 신속추격 품목 : 기술 캐치업 전략 + 실증 패키지 추진 – 분야별 해외 최정상급 석학과의 협업 및 선도기술 도입을 통한 국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전면 개편 – 민관 합동 6개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신설하여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 **② [시장] 글로벌 신시장 진출 활성화** – 에너지 파트너십 강화,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원전 협력 등 정상회의 성과를 모멘텀 삼아 실제 수출로 연계되도록 권역별 G2G 협력 강화 – 국가별 맞춤형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발굴, 그린 ODA 외연 확대(다각화, 대형화, 협력확대) 등 우리기업의 신시장 진출 지원 강화 – 「에너지 新산업 민관 얼라이언스」를 출범하여 동반진출, '에너지 新산업 수출카라반' 운영을 통한 수출애로 해결 등 판로개척 집중 지원 **③ [인프라] 수출동력화 혁신기반 조성** – 약 5천억원 규모의 정책펀드 조성(~'23), 100조원 이상의 민간 금융투자 확대(~'30) 등 에너지 新산업 금융·투자 확대 – 세계 최정상급 인재 유입 플랫폼으로 에너지혁신연구센터 고도화, 「수출특성화 인재육성 프로그램」 신설 등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 에너지 분야 (국내) 규제샌드박스 지원 강화, (국내-해외) 에너지 新산업 전문무역상사 매칭 확대, (해외) 에너지 新산업 협력센터 구축 등 혁신기반 확충	
식품 의약품 안전처	• **2023년 식약처 표준품 종합안내서 발간** **-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생약,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총 772품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계의 의료제품 연구개발과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바이오의약품·생약·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목록과 분양 절차 등을 담은 2023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 종합안내서를 발간·배포함 ※ 표준품 : 성분과 함량이 정확하게 알려진 높은 순도의 표준물질 주요 내용으로는 ▲ **새롭게 확립한 61개 표준품 안내** ▲ **현재 보유한 의료제품 표준품* 목록** ▲ **분양 신청 방법** ▲ **마약류 표준품 신청자료 요건** ▲ **분양 표준품 취급 요령** 등이 있음 * (의약품) 265품목, (바이오의약품) 33품목, (생약) 403품목, (체외진단의료기기) 70품목, 총 772품목	2023- 07-24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령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문화체육관광부	• **「미술진흥법 (제정법)」 (2027.7.26. 시행 예정.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33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도록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술, 미술품, 미술기록물, 미술전시, 미술 서비스업 등 미술진흥에 필요한 법적 용어를 규정함 (제2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함 (제5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정책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 및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제6조)** **④ 미술진흥을 위한 창작 지원 및 전시 지원, 창작공간의 확충, 지역미술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등 미술생태계의 전반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함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⑤ 누구든지 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미술 관련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제15조제4항)**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는 진품증명서 등의 발행을 해당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제16조)**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제17조)** **⑧ 법률에 따라 고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 (제17조제4항)** **⑨ 미술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미술 서비스업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제18조 및 제19조)**	2023-07-2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술 관련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미술 관련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미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23조)** ⑪ **작가에게 미술품의 재판매 시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부여함 (제24조)** ⑫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술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제27조)** 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미술품의 구매 · 처분에 관한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는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내에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함 (제30조)**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7.25. 시행)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위생제도분과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위원회, 국제식품규격분과위원회 등으로 분과위원회의 전문분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조리 · 가공 등을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제21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65조의2 등)**	2023- 07-25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 재정부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방식을 신탁재산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합병차익 등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를 조정하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연결집단에서 결손 발생 시 연결법인별로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목적신탁 등에 대해 수탁자과세 적용 (안 제5조)** – 현행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은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익자가 불특정되거나 다수인 경우에는 수탁자 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익자가 불특정되거나 다수인 경우에는 수익자 과세가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므로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에 대해 수탁자 과세를 적용하도록 함 **②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안 제18조)** – 「자산재평가법」 상 재평가적립금은 배당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재평가적립금을 제외함 –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차익 및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의 분할차익 중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③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안 제18조의2)**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으로 지급하거나, 적격 합병 · 분할 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 해당 금액을 감액하여 배당으로 지급한 경우 익금불산입 범위에서 제외함 –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얻는 이익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으로서 익금불산입 범위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함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요건 완화 (안 제18조의4 제1항 및 제57조제5항)**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지분율 요건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변경 **⑤ 연결납세방식 적용의 포기 허용 (안 제76조의10)** – 2024년부터 연결납세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으로서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자법인이 아닌 연결자법인이 포함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2월 28일까지 신고기한 특례를 설정함	2023- 07-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⑥ 연결배제 시 연결변경신고 기한 조정 (안 제76조의11) – 연결법인 변경 시 법인세 신고 이후 연결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결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연결변경 신고기한을 변경함 **⑦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근거 마련 (안 제75조의15 및 제75조의19)** – 연결법인의 소수주주와 채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각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공제된 경우 각 연결법인별로 귀속되는 세액상당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⑧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 (안 제93조의4)** – 외국법인이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 대하여 법 제98조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외국법인이 비과세 · 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⑨ 비과세 · 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안 제98조의4제5항 및 제98조의6제4항)** – 비과세 · 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을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 기한(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부합하도록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후 5년 이내로 규정함 **⑩ 연결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허용 (안 제113조)** – 연결모법인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 또는 분할합병 시 구분경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⑪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기한 명확화 (안 제120조의4)** –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다음달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기별 거래명세서와 연간 거래집계표의 제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간 거래집계표의 경우 연도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7/28(금)~8/11(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남용 방지를 위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종업원등의 범위를 조정하며,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기부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용역 기부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에 대해 100분의 10을 추가로 세액공제 하고,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 국내자회사 등에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를 부여하며, 외국인통합계좌 과세특례 규정 신설,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 확대**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안 제12조제3호마목)**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법령이 아닌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 소득에 포함함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안 제12조제3호머목 및 같은 조 제5호아목4)**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안 제59조의4제2항)** – 출산·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미적용되는 대상에 6세 이하 아동을 추가함 **②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조정 (안 제12조제3호어목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규정 남용 방지를 위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종업원등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소유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 **③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안 제14조제3항)** – 사적연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때 분리과세되는 기준금액을 연간 1,200만원 이하에서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④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가산율 조정 (안 제17조제3항)** –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을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으로 조정함 **⑤ 연금계좌 납입액 관련 조문 정비 (안 제20조의3제1항)** – 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은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류됨을 명확히 함	2023-07-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⑥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시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25조제1항)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시 소형주택(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⑦ 자원봉사용역 기부 인정 대상 확대 (안 제34조제2항제1호)** – 자원봉사용역 기부 장려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 · 병원 · 비영리법인에 제공하는 자원봉사용역을 특례기부금에 추가함 **⑧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안 제52조제5항 및 제6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상향하고 공제한도금액을 확대함 **⑨ 고액기부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신설 (안 제59조의4제8항)** – 고액기부에 대한 유인 확대를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100분의 10을 추가로 세액공제함 **⑩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예외 규정 (안 제86조제1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액부징수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⑪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안 제88조 및 제95조)** – 주택 정의 규정에 주택의 시설구조상 특징을 반영하여 구체화함 –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용도변경일 또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변경함 **⑫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안 제93조의2)** – 양도소득세 이해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요약하여 제시함 **⑬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 (안 제119조의4)** –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 대하여 법 제156조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비거주자가 비과세 · 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⑭ 비과세 · 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안 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4항)** – 비과세 · 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을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 기한(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부합하도록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후 5년 이내로 규정함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⑮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안 제164조의5 신설) –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을 받은 경우 그 거래내역에 대한 제출 의무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게 부여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7/28(금)~8/11(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로 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기술이전·대여소득 과세특례 등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콘텐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며, 기업의 고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중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와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납부고지 유예 등의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기준을 확대함** 또한, **출산·양육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급액을 인상하고,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및 도서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각각 100분의 10 상향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합리화 하며,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도입하고,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개정 (안 제7조)** –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명과 동일하게 수정함 **②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납부고지 유예 등의 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99조의6, 안 제99조의8)** – 사업에 실패하였으나 재기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사업 영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액 과세특례 및 납부고지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023-07-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③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99조의10) –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기 영세사업자의 기간 요건과 신청기한을 1년씩 연장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①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10조의2제1항)** – 정부 출연금을 통한 R&D 확대 및 일시적 과세부담 완화를 위해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② 기술이전 ·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12조)** –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사업화 유도를 위해 기술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③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12조의2제1항)** –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④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충족기간 연장 (안 제12조의4)** – M&A를 통한 기술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지분을 50% 이상 취득해야 하는 기간을 최초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서 최초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까지로 연장함 **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 추가 (안 제13조)**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가 해당 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함 **⑥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 (안 제13조의2)** – 민간의 벤처기업 투자재원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금의 100분의 60과 해당 조합을 통한 벤처기업등에의 출자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해당 출자에 대하여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출자액 평균 대비 해당 사업연도 출자액 증가분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함 **⑦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 추가 (안 제14조)** –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를 포함함 **⑧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 추가 (안 제16조)** – 벤처투자 등 소득공제 10% 적용대상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함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18조, 제18조의2) – 우수 외국인력 유입 지원을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⑩ 주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 (안 제18조의2제3항단서 신설)**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주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함 **⑪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46조의8제1항)** –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1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한 주식의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①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안 제25조의6제1항)**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하고, 10%(중소기업은 15%)의 추가 공제율을 신설함 **②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안 제25조의8)** –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금액의 3%를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①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29조의8)** –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정규직 근로자 전환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②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30조제1항)** –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를 위해 청년 · 장애인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③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30조의3)** – 근로소득 증대를 위하여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 (안 제30조의6)** – 과세특례 세율 10% 구간 상한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가업관련 조세범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배제 규정을 신설함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유예기간 및 적용기한 연장 (안 제38조의2 및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 및 부칙 제1조 단서 · 제19조 · 제44조)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해 현행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특례의 유예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24년 시행예정인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①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64조제1항)** – 국가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하여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②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66조, 제67조 및 제68조)** – 영농 ·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 ·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적용하고,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③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69조)** –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④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 확대 및 명확화 (안 제70조의2)** –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농업인의 상속인을 양도소득세 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특례 적용 농지의 취득가액 등을 명확화함 **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합리화 (안 제71조)** – 영농관련 조세범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배제 규정을 신설함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77조, 제77조의2)** – 공익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②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85조의7, 제85조의9)** –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전기업 지원을 위해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도 상향 (안 제87조제2항, 제7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 **②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안 제87조제3항)**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③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안 제87조의7제1항, 제4항)**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의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투자일로부터 3년 내 소유권 이전 시 추징대상에서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전환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함 **④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안 제91조의19제1항)**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⑤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안 제91조의20제1항, 제2항, 제5항)**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가입일로부터 3년 내 해지 시 추징대상에서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 가입하기 위하여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 **⑥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가입시 소득요건 적용에 대한 특례 (안 제90조의3)** – 청년도약계좌 등의 가입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소득증명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즉시 판단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소득만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는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96조의3제1항)** –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②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99조의9제1항)** – 위기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근로 장려 및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①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금액 인상 (안 제100조의7제2항)** – 근로·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도 당초 신청금액의 100분의 90이 아닌 100분의 95를 지급하도록 함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자녀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안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경우(종전 4천만원 미만)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③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안 제100조의29제1항)** –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 **【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제100조의14, 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18)**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업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 대해서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함 **【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 **①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금액에 대한 손금 산입 허용 (안 제104조의11)** – 저신용자 등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금액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함 **②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등 (안 제104조의15)** –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함 **③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안 제104조의16)** – 대학의 재정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체취득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시까지 법인세 과세를 이연함 **④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안 제104조의2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함 **⑤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104조의32)** –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적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⑥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손금한도 특례 신설 (안 제104조의33 신설)** –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 대여금(미수이자 포함)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대여금 채권잔액에서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을 뺀 금액에 일정 손금산입률(24년 10%, 이후 매년 10%씩 상향)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게 함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⑦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117조제2항) – 우정사업본부, 연기금이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⑧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 · 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117조제2항)**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주주 등이 주식을 이전 또는 교환하여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⑨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무구조개선기업 지분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117조제2항)** –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⑩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117조제2항)**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식 등을 교환하여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⑪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의 중복지원 배제 (안 제127조제1항)** – 국가 보조금 등으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대상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서 제외함 **⑫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 (안 제133조)**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토지를 분필 또는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할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함 **【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 **① 도시철도 건설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안 제105조제1항)** – 도시철도 건설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② 공장 · 학교 등의 급식용역,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106조제1항)** – 공장 · 학교 등의 급식용역,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③ 천연가스 시내·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 추가 (안 제106조제1항제9호 및 제9호의2)**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천연가스 시내·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을 추가함 **④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및 간이과세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 (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3 및 안 제106조의11 신설)**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하고 간이과세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신설함 **⑤ 농업 · 임업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106조의2제1항)** – 농업 · 임업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⑥ 금 관련 제품 거래시 세금계산서 작성·제출 관련 보전명령 근거 마련 (안 제106조의4제13항 신설)**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인 금 관련 제품 거래시의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보전명령 근거를 신설함 **⑦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안 제106조의7제1항)**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⑧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안 제106조의9제1항)**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을 금·철·구리에서 비철금속류로 확대 **⑨ 스크랩등 거래시 세금계산서 작성·제출 관련 보전명령 근거 마련 (안 제106조의9제13항 신설)**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인 스크랩등 거래시의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보전명령 근거를 신설함 **⑩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108조제1항)**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⑪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111조의2제1항)** – 경형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⑫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111조의3제1항) – 택시에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⑬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116조제2항)** –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 · 통장,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안 제118조제1항제3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 이용 촉진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⑮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121조의23제10항 및 안 제121조의25제7항·제8항)** –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수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⑯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126조의7제9항)** –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하여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121조의8제1항)**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②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121조의9제1항)** – 제주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①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121조의17제1항)** – 기업도시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②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사유 합리화 (안 제121조의19제1항)** – 지역개발사업구역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121조의20제1항)**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①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121조의21제1항)** –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121조의22제1항)** –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기타 조세특례 】** **①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122조의3)**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의 성실신고 유도 효과 등을 감안하여 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안 제126조의2제2항)** – 전통시장 이용 및 문화비 지출을 장려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및 도서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각각 10%p 상향함 **③ 전통시장 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손금한도 특례 신설 (안 제136조)** –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업업무추진비 중 전통시장 구역 내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에 추가하여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7/28(금)~8/11(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로 제출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백신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분야와 관련된 국가전략기술을 구체화하여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등 바이오 의약품 핵심 세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7 제7호가목1) · 3) · 9) · 10)을 각각 삭제 및 별표 7의2제7호를 신설)** ※ 의견 제시기간 : 2023/7/28(금)~8/10(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로 제출	2023-07-2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바이오의약품 분야 관련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안 별표 6의2 제7호 신설)** –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바이오시밀러 제조시설 등 바이오의약품 분야 관련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범위에 추가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7/28(금)~8/21(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로 제출	2023-07-28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및 공제한도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간편사업자 등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간편사업자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023-07-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위임규정 명확화 (안 제8조제9항 및 제10조제6항)** –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에 대한 위임 근거 규정을 명확히하고 구체적인 등록 말소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②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 (안 제10조제1항 및 제29조)**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해당 사업자의 면세사업 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 **③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34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의2제1항 및 제62조제1항)** **④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연장 (안 제42조제1항)** – 음식점업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 **⑤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연장 (안 제46조)** –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1.3%) 및 우대공제한도(연 1천만원)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⑥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 규정 마련 (안 제60조제1항)** – 간편사업자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함 **⑦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징수 관할 명확화 (안 제60조제4항)** –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 명확화함 **⑧ 간이과세 포기신고 철회 근거 마련 (안 제70조제4항 및 제5항) 등** –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7/28(금)~8/11(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로 제출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주세율을 조정하는 맥주 · 탁주 종량세율 관련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주세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서민 주류가격 안정을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이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율 경감제도를 3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023-07-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탁주·맥주 주세율의 물가연동제 폐지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에 적용되는 물가연동제도를 폐지하고 법령에서 세율을 직접 규정하되, 주류 종류간의 세부담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② 생맥주 세율경감제도 일몰 연장 (안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 서민 주류시장 가격 안정 및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이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해 적용중인 세율경감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의견 제시기간 : 2023/7/28(금)~8/11(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로 제출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제조·판매업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규정을 합리화하고,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규정의 편제를 정비하며, 주류 제조면허에 대한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금액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주류제조·판매업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합리화 (안 제7조)** – 주류 면허 취소자가 면허취소 후 그 특수관계자, 법인의 전환 및 신설 등을 통해 2년 이내 면허를 재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그 면허가 취소된 영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면허를신청할경우 재취득을제한하는한편, 그특수관계인이 전환·신설법인의 대표자·임원으로 선임되는 것도 제한함 **②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금액 기준 현실화 (안 제13조)** –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중 하나인 주세포탈 기준금액을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함 **③ 식품접객업 영업장소 내 주류의 가공·조작 등 허용 범위 명확화 (안 제14조의2제1항 제8호)** – 주류의 소분 판매 허용 범위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주류의단순 가공·조작은 허용됨을 명확화 **④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안 제38조)** – 주류제조·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금품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023-07-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 2023/7/28(금)~8/4(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로 제출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관세포탈범을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하며, 우회덤핑에 따른 덤핑방지조치의 효과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도입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함**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세관의 물품검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폐지**함 아울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및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를 마련하며, 과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관세조사 정의 및 범위 합리화 (안 제2조, 제110조, 제110조제2항 등)** – 관세법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관세조사의 정의가 납세자 권리헌장조항(제110조) 및 통합조사 원칙 조항(제110조의2)에 분산되어 있어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② 과세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 (안 제12조)** – 신고 · 제출한 자료 대신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 포함)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함 **③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 (안 제21조제1항)** –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사유에 '불복신청 · 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추가함 **④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자료 요구 사유 추가 (안 제37조의4제1항)** – 관세조사의 일반정의(관세법 제2조) 신설로 관세조사가 세액심사와 분리됨에 따라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요구 사유에 기존의 세액심사 외에 관세조사를 추가함 **⑤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안 제42조의2제1항)** – 보정기간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하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2023-07-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⑥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안 제56조의2 신설) –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해당 조사개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하도록 함 **⑦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의 잠정조치에 대한 사후 정산 합리화 (안 제53조제2항 · 제3항 및 제59조제2항)** –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전 잠정조치에 대한 사후 정산의 사유로 해당 잠정조치의 유효기간 종료를 추가하고 정산 시 담보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 **⑧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안 제83조제1항 · 2항, 제108조제2항 · 3항)** –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관세를 추가하고, '용도세율 전용물품'은 용도세율 적용 신청 및 사후관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⑨ 품목분류 체계의 수정에 대한 의미 명확화 등 품목분류 제도의 개선 (안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 – 품목분류체계의 수정은 법 별표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표 등을 수정하는 사항임을 명확화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제도 및 품목분류 변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⑩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 (안 제116조의2)** –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관세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를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함 **⑪ 선상 견본품 반출 절차 마련 (안 제161조 제1항 · 제4항)** – 하선 전에 수입물품의 검사가 불가피한 경우 보세구역 반입 전이라도 선상에서 견본품을 채취·반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⑫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변경 (안 제164조제5항)** – 물품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하는 의무를 삭제하고, 대신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생략하는 절차를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변경함 **⑬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 허용 (안 제165조)** –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를 제한하지 않도록 미성년자 판단 기준시점을 등록 신청일로 변경함 **⑭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 (안 제175조)** –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 죄를 추가함 **⑮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 (안 제206조제1항)** –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에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휴대품을 반입하는 경우를 추가함 **⑯ 보세운송수단 관련 의무 위반행위 규제 (안 제216조, 제277조제5항)** – 보세운송 신고인이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⑰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신설 (안 제222조의2)** – 국제항 내에서 환적 또는 수출신고수리한 물품에 한해 국제무역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절차를 마련함 ⑱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 (안 제224조)** – 보세운송업자 등의 행정재제에 대한 법적 위임근거를 마련함 ⑲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안 제246조의2제2항)** –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에서 '포장용기·운반수단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이에 따른 보상기준을 마련함 ⑳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안 제247조제3항)** – 수수료의 일반적 의미와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 필요성을 감안하여 세관공무원이 물품 검사 시 신고인이 납부하는 수수료를 폐지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7/28(금)~8/4(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로 제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등을 위해 개별 · 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을 단축하는 등 국제거래 자료제출 제도를 합리화**하는 한편, **거주자 · 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 의무를 도입하여 역외 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정보자동교환 동료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기적 금융정보 제공기관 용어·범위 등을 정비하고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24년 시행을 앞둔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규정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합의·발표한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일부 보완하였으며 세계 주요국의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 등 (안 제16조)** 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기적 금융정보 제공기관 용어·범위 등 정비 (안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89조)**	2023-07-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③ 조세조약의 이행 관리 및 국제조세 협력 강화를 위해 체약상대국과 공동으로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42조제6항) **④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안 제54조)** **⑤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안 제58조, 제59조, 제91조)** **⑥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정부 제외 (안 제61조제1항제1호가목)** **⑦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 (안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⑧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 (안 제61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⑨ 최종모기업 범위 보완 (안 제61조제1항제6호)** **⑩ 투자구성기업 특례 적용 대상 규정 (안 제61조제1항제18호 및 제79조제1항) 등** ※ 의견 제시기간 : 2023/7/28(금)~8/11(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로 제출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의 안전과 대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밀검사 주기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경 · 소형 승합 · 화물차(사업용 화물차 제외)의 경우, 정밀검사의 시기를 신차 등록 후 3년 이후에서 4년 이후로 변경 (안 별표 25)** ※ 의견 제시기간 : 2023/7/26(수)~9/4(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교통환경과)로 제출	2023-07-26
금융위원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역전세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진 임차인을 위해 임대차보증금 반환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7.27.)함에 따라, **반환대출을 이용하는 임대인과 추후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후속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전세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원활한 보증금반환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2023-07-2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인 자격을 임대인에게도 부여 (안 제3조제5호 신설)** – 주택 또는 준주택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신청인 자격을 임대인까지 확대 (단, 임대차보증금 반환대출 규제완화 기간을 감안해 2025.9.30. 이전에 개시된 임대차계약의 신규 보증신청에 한함) **② 전세금 반환보증을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 동일인 신용보증 한도 확대 (안 제28조제2항제1호 단서)** –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을 두 채 이상의 주택 또는 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신청시, 동일인당 보증한도로 인한 보증 공급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당 신용보증 한도를 임차인 한도인 10억 보다 큰 30억원으로 확대 **③ 전세금 반환보증을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안 제37조의2제3호 및 제4호)** –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의 신용보증,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를 위해 보증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7/24(월)~8/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거시금융팀)로 제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 작성 및 신원확인 의무 등이 부과**되는 바, 위임사항 등을 포함하여 필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사항 (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성명·소속·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도록 함 **②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신원 확인(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③ 연락금지요구 사항을 구두로 알리는 경우 서면 등으로 추가 알림 (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위하여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을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알린 경우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추가적으로 알리도록 함	2023-07-2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④ 연락금지요구에 대해 1개월 내 조치 (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1개월 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함 **⑤ 연락금지요구에 대한 의무 이행 시스템 마련 (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이에 따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⑥ 연락금지요구 시 소비자 부담 방지 (안 제16조의2제4항 신설)** – 연락금지요구 의무 이행 시스템 마련시 전자우편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 등의 조치 필요 **⑦ 기관 및 임직원 조치 기준 마련 (안 별표1 1호의2, 11호의2, 11호의3)**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관 및 임직원 조치 기준 마련 **⑧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 (안 별표4 나목, 차목, 카목, 저목)**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 ※ 의견 제시기간 : 2023/7/26(수)~8/21(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로 제출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정무 위원회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예탁금·적금 등(이하 “예탁금등”이라 함)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또한 현행법령은 중앙회가 예탁금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가 위 기금을 통하여 대신 변제하도록 하고, 이 때의 보장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은행의 연쇄 파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업계에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현행법령에 따른 예탁금등의 보장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조합원 등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등의 환급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80조의2제4항 등)**	2023-07-2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투자계약증권 등은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이고 현실적인 유통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자본시장법 규정 중 발행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 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의 경우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모든 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유통에 관한 제도를 동일하d게 적용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 증권의 유통은 상장시장에서의 주식 거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다양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음 이에 **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 등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한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 · 발표하여 현행 전자증권법 · 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제도화하면서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규모 장외시장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음	2023-07-2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온라인 · 디지털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다수 투자자 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계약증권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하여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함 (안 제4조제1항)** **② 상장시장에 해당하는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의 형성을 가능하도록 함 (안 제166조제1항 신설)** **③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안 제166조제3항 신설)** **④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려 함 (안 제166조제4항 신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정보를 다수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분산원장 기술은 금융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해외 주요국에서도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 중앙집중형 증권 발행 · 유통 인프라보다 효율성, 보안성, 시스템 안정성 및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의 전자증권법에 대응하는 전자증권도입법을 제정하면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 · 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발행인도 그 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증권 거래 방식을 혁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 · 발표하여 현행 전자증권법 · 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제도화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증권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제도에 해당하는 전자증권법에서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뒷받침 하에 안정적인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전자증권법 체계에 마련된 총량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3-07-2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주식등의 정보를 다수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분산원장을 정의하고,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 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하는 한편, 분산원장을 이용해 자기가 발행한 주식등의 전자등록업무를 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정의함 (안 제2조) ②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를 신설하여 자기자본, 인력 · 물적설비, 분산원장, 대주주,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 제19조의3 신설) ③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대주주 요건 외 등록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되, 자기자본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은 완화된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안 제19조의4 신설) ④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유지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폐업 · 파산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의5 신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만을 이용하도록 함 (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⑥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대해서도 현행과 동일하게 그 작성 및 관리 책임은 계좌가 개설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지도록 명확히 함 (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⑦ 전자등록기관이 총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려는 경우 4주 전에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부를 열람 · 출력 · 복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⑧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분산원장등록주식등과 분산원장이 아닌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 간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안 제23조의2제6항 신설) ⑨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 파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거래 관계 종료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파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 (안 제23조의3 신설) ⑩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책임으로 인하여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그 해소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전자등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원 적립 의무를 부과함 (안 제42조의2 신설) ⑪ 금융감독원장 외에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도 전자증권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9조)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⑫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업무에 분산원장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 이용에 관한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안 제73조) **⑬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 관리방법을 위반하거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초과분 해소를 위한 재원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분산원장을 이용하는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의 총량관리를 위한 통지 또는 열람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75조)**	
기획재정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중소 · 벤처기업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고 벤처 창업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주식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의 창업활성화 정책에 따라 기업의 숫자는 증가했지만, 벤처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본과 가용자본의 격차가 벌어지고, 재투자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존재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를 독려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유인하는 한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 등을 하고자 하는 내국법인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과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주식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중소 ·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비율을 5%p 상향하여 15%로 조정함 (안 제12조의3제1항)** **②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비율을 5%p 상향하여 15%로 조정함 (안 제12조의4제1항)**	2023-07-2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최근 덤핑방지관세 부과 후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소한 변경 등을 통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신속한 국내산업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품에 사소한 변경이 있더라도 반덤핑 조치대상과 동종물품일 경우 부과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51조의2 신설)**	2023-07-25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수입물품의 가격을 저가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는 사범 적발은 지속되고, 사건은 대형화되는 추세임. 2022년 관세포탈 적발 금액은 3,228억원으로 2018년 505억원 대비 539% 증가하고 동(同) 기간 적발된 관세포탈 건당 금액 증가율은 1,246%에 육박하고 있음 관세포탈은 국가 세수 감소 및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업체의 피해로 이어지는 등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써, 관세 포탈 범죄를 방지하고 미납세액 납부 유도를 위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관세범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현재 고액 · 상습 체납자를 비롯한 조세포탈범 명단을 공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만, 고액의 관세포탈 사범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고액 관세포탈사범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제116조의6을 신설함으로써 관세포탈 · 부정감면 · 부정환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차질 없이 세수를 확보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한 관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안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6)**	2023-07-26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경기부를 설치 ·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이스포츠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인건비,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일부 비용에 대하여만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의 핵심이 되는 국내 게임 산업은 문화 · 콘텐츠 분야 신성장 · 원천기술이 집중된 결과물이자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문화예술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이스포츠 산업은 2020년부터 성장세가 꺾였고 글로벌 산업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스포츠의 종목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되고 종목 선정을 위해서는 전문선수 및 자체 리그구조를 구축하는 등의 저변을 갖추어야 하는데, 국내 이스포츠 종목사만이 무작정 손실을 감수하며 지속 투자하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스포츠 종주국이라는 위상과 달리 국내에서 개발한 이스포츠 전문종목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스포츠경기부의 경우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해체가 잦은 등 국내 이스포츠 산업의 생태계는 낙후된 실정임 이에 **이스포츠 종목사를 비롯한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의 종목과 관련된 경기대회를 개최, 지원, 홍보하는 등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대회 활성화를 통한 해당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선수단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27 신설)**	2023-07-2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의 한 유형으로 정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생성된 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가 아닌 경우 현행법상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규제 없이 정보통신망에 유통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이를 불법정보로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3 신설 등)**	2023-07-26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 ·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기술 · 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할 수 있음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 · 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나,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해당 법령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나, 법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고, 임시허가 제도를 운용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등의 경우 연장을 제한하는 예외 규정이 없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시허가도 동일한 유효기간 연장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법령정비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6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제6항)**	2023-07-27
행정안전위원회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 회원과 고객 보호를 위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장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회원 등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원 등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회원과 고객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함 (안 제72조의3제3항 신설)**	2023-07-2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현행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 · 위탁거래에 관한 실태파악, 사업조정 신청,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등을 위해 관련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소속 공무원이 조사한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기관에서 구체적 특정 없이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의 추상적 · 포괄적 이유를 내세워 문서송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사문화되어 가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함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 · 탈취로 인한 피해건수는 280건, 피해금액은 2,800억원에 달하며 75%가 입증자료 부족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자료 요구의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행정조사 관련 자료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 본 규정의 사(死)문화를 방지하며,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는 등 소송상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고자 함 (안 제40조제4항)**	2023 07-26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등의 인센티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인센티브 대상에 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되고 국내복귀기업 등은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이들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기업 중 국내복귀기업을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전용용지 공급과 조성토지 공급의 인센티브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현행법의 목적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국내복귀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전용용지 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유치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1항제13호 및 제9조의7제2항)**	2023- 07-26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 전환과 새로운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 8월 제정되어,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의 일몰기한 연장 개정을 거쳐 2027년 12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음 그러나 혁신성과 성장성을 내포하고 있는 벤처기업 생태계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 정의 및 요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져 벤처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법 제3조의3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육성계획의 효율적 수립 · 추진을 위해 매년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시행 및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1년도 벤처기업 현황자료가 2022년 12월에 발표되는 등 조사와 공표 사이의 간극이 발생해 사회 여건에 따라 급변하는 벤처 생태계의 역동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를 반영한 신속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벤처기업을 위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연 2회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안정적 ·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시의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3제1항, 법률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삭제)**	2023-07-26
환경노동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요구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지난 3월 선거관리위원회 채용공고에서 지원자의 이력서가 공개되는 등 국가기관에서도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청년들을 중심으로 채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고, 반환기간이 도과하면 파기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통해 제출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사실을 구직자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직자는 자신의 채용서류가 법에 따라 제대로 파기되었는지 인지하기 어려워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인자가 구직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직자에 고지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	2023-07-2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토교통위원회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2인)」** 현행법에서는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표시등기나 표시변경등기,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의 우선적 효력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2023년 4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음 그러나 이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납세정보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납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기관이 「국세징수법」 제45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55조에 따라 촉탁받은 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촉탁 당시 첨부된 압류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액을 기록하도록 하여 세금체납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등기부에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96조의2 신설)**	2023-07-28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부동산 명의신탁행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을 모두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현행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본인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가능케 하여 역설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사실상 보장되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일부 건축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되는 등 전세사기와 명의신탁약정을 결합하여 임차인들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과 관련하여서는 명의신탁자가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확신을 제거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명의신탁으로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전세사기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2 신설)**	2023-07-28

④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2023. 7. 26)

소관위	처리법안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 위원회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N번방 사건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생명 ·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급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 ·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사 · 의결 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함 **기대 효과로는 긴급청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사 · 의결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 가능함**
농림 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지 표시 대상에 수입 석재의 포함 및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 폐지, 석재사업자가 토지 · 자금 확보와 사업계획 수립 등 제반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석재사업자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석재사업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 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② 토석채취제한지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 시, 토석채취제한지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 ③ 수입 석재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 폐지 **기대 효과로는 석재산업의 진흥이라는 이 법의 취지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토석공급 여건의 조성과 함께 경관·환경보호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석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 위원회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신기술을 활용한 식품 · 의약품 등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과학*은 제품이 신속하게 개발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가교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규제과학 : 식품 ·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의 평가부터 인 · 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법 등에 관한 과학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의약품 규제기관들에서는 2010년대 초반부터 규제과학의 개념을 정의하고, 규제과학의 진흥을 위해 교육기관과 중점 연구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과학을 진흥하기 위한 법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소관위	처리법안 및 주요내용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률의 제명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변경함 ② “식품 · 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을 “식품 ·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의 평가부터 인 · 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법 등에 관한 과학”으로 정의하고, “규제과학혁신”을 “식품 · 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물을 안전관리, 제품화 지원 등에 활용함으로써 식품 · 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함 ③ 규제과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품화 지원,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등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함 **기대 효과로는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과학혁신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에 기여함**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특허정정을 통하여 등재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특허 등재를 허용하고, 특허 등재 사항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며,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를 정비**함 **기대 효과로는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후발 의약품의 개발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8/4(금)	국회 법제실,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 발간 -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수상 우수법률안 및 평가기준 소개	
국회도서관	8/2(수)	금주의 서평 제639호 발간 - 도서명 : 각자도사 사회 - 저자:송병기	
	8/2(수)	「Data&Law」 제2023-7호 발간 - 데이터로 보는 장애인 취업과 고용	
입법조사처	7/31(월)	「외국 입법·정책 분석」 발간 - 일본 정년 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미래연구원	7/31(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3호 발간 - 민주화 이후 한국의 노동정치-한·미·일 비교분석	

[별첨1] 제408회국회(임시회) 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과방위	7/31(월) 14:00	안건조정위원회	-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7/31(월) 14:00	[한국미래문화예술포럼 창립 기념 국회 포럼] - 미래 청년예술세대 일자리 창출과 방안 모색	김승수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7/31(월) 14:00	소방산업의 중요성과 진흥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토론회	임호선·오영환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8/1(화) 09:30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강성희·민형배·용혜인· 이은주·진성준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8/3(목) 07:30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 아침세미나 하반기 경제전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회관 3간담회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호 뉴스레터(제195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7/24(월)	「이달의 입법민원」(2023. 6월호) 발간	
	7/25(화)	국회 법제실, 「헌법과 법제」 제19호 발간	
국회도서관	7/25(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27호 발간 - 친환경 전환을 위한 프랑스 '녹색산업법(안)'	
	7/26(수)	금주의 서평 제638호 발간 - 도서명 : 운이란 무엇인가 - 저자:스티븐 D. 헤일스	
	7/27(목)	「현안, 외국에선?」 제63호 발간 - 미국과 영국의 출생신고제도 현황	
예산정책처	7/27(목)	[결산분석시리즈 Ⅰ]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첨부1 / 첨부2)	
		[결산분석시리즈 Ⅱ]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교육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결산분석시리즈 III]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I -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II	
		[결산분석시리즈 IV]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V] 202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VI]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 -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분석 - 디지털 전환 정책 및 주요 사업 분석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분석	
입법조사처	7/24(월)	**「NARS 현안분석」 제297호 발간** -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의 쟁점과 향후 과제	
	7/25(화)	**「NARS Brief」 제12호 발간** - 지방소멸론과 농촌정책 : 현실 인식과 정책 설계의 엇박자에 관해	
	7/28(목)	**「이슈와논점」 제2119호 발간**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최근 개정내용 및 향후 과제	
	7/29(금)	**「NARS 현안분석」 제298 발간** -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7/24(월) 10:00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윤호중·홍익표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7/24(월) 10:30	**국가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도출을 위한 정책 토론회**	권성동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7/25(화) 15:00	**치료 사각지대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 - 중증 천식 환자 삶의 질	서영석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7/25(화) 19:00	**2023년 하반기 미래의제 융합포럼 1차** - 地球學,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민병덕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실
7/26(수) 14:00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 6** -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콘텐츠 투자재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변재일·김영식 의원실, 미디어미래연구소	의원회관 2세미나실

5. 지난주 (7/24～7/30) 법무법인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분야	내용
7/24(월)	조세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증여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7/25(화)	금융	신용카드회원의 범죄행위로 카드승인이 취소된 것에 대하여...
7/26(수)	건설/부동산	2023. 10.부터 단속 예정인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7/27(목)	형사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7/27(목)	조세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지구단위계획 변경 등)가 인정되어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례
7/27(목)	건설/부동산	'주거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이라고 광고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광재** | 변호사 T. 02-316-1624 E. kjakim@shinkim.com
- **김성범** |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